powerful pohang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	기	관	의	장	
선					
람					



포항시보

제1155호 2017. 7. 11(화)

•	│고 시 ▶	
0	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(제2017 — 97호)	2
0	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여 고시(제2017 — 98호)	4
4	1공 고▶	
0	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(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제2017 – 225호)	9

회				
람				

발행 : 포항시 편집 : 홍보담당관(☎270-2233)

190×268 신문용지 70g/m²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7 - 97호

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포항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7. 3.

포 항 시 장

1. 사업시행지 : 포항시 남구 지곡동 산116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사업 - 명 칭 :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주 소 :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번지

- 성 명 :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이강덕

4. 사업계획 내용

- 사업기간

· 당초 : 2001.5.2 ~ 2017.12.31. · 변경 : 2001.5.2 ~ 2022.12.31.

- 면적 또는 규모

· 건축연면적(건축면적) : 63,723㎡(18,446㎡) - 변경없음

· 연구개발시설용지 건축규모 조정 : 연면적 39,665㎡ ⇒40,901㎡(증1,236㎡)

· 지원시설용지 건축규모 조정 : 연면적 24,058㎡ ⇒22,822㎡(감1,236㎡)

- 토지이용계획(변경)

(단위: m²)

	וער	연구개발	지원시설	공공시설용지						
구 분	계	시설용지	용지	소계	도로	오수처리시설	배수지	녹지		
당 초	139,298	38,604	31,979	68,715	8,774	933	2,061	56,947		
변 경	139,298	40,608	29,975	68,715	8,774	933	2,061	56,947		
증 감	_	증2,004	감2,004	_	_	_	_	_		

- 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자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: 붙임
- 6.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변경사항 없음
- ※ 관계 편입토지조서,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(☎054-270-35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

[포항시 남구]

	4	노재지		면적	(m²)	소 유 자		관 계 인			
구분	리.동	지번	지목	공부상 면적	편 면 면	주	소	명	주소.성명	권리의 종류및 내용	비고
1	지곡	601	대	16,729	16,729	포항시 지곡동		(재)포항 테크노파크			
2	지곡	909	대	1,809	1,809	포항시 지곡동		(재)포항 테크노파크			
3	지곡	911	대	2,030	2,030	포항시 지곡동		(재)포항 테크노파크			
4	지곡	산116		121,800	118,727	포항시 지곡동		(재)포항 테크노파크			
5	지곡	산119-2	ᅙ	3	3	포항 다	도동	이*범			
계					139,298						

포항시 고시 제 2017-98호

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여 고시

「지방자치법」제152조제1항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 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·조사하고 자료·정보·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포항시가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6월 28일

2017.7.11.(화)

포 항 시 장

□ 참여목적

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·조사 하고 자료·정보·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대도시 특수성을 반영한 차등분권 실현

□ 참여 도시 현황 : 15개 대도시

○ 수원시, 고양시, 성남시, 용인시, 부천시, 안산시, 남양주시, 안양시, 화성시, 청주시, 천안시, 전주시, **포항시**, 창원시, 김해시

□ 혐의회 구성

○ 대 상 : 인구 50만 이상 전국 기초자치단체

○ 조직형태 :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

○ 주요기능

- 대도시 특례 등 대도시 자치 강화 관련 공동 연구 추진

- 대도시 특례 관련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활동

-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분권 개헌 관련 포럼·세미나 개최

- 기타 협력사업 공동대응 등

○ 회의개최 : 정기회의 연 4회,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

○ 부 담 금 :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

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- 제2조(목적) 본 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,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·조사하고 자료·정보·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회원의 자격) ① 회원자격은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으로 한다.
 - ②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자격요건이 성립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.
- 제4조(사무소의 위치등)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·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 관·관리한다.

제2장 임원 및 운영

- 제5조(임원의 구성등)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을 3인 이내로 둔다.
 -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6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 - ②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 시점부터 차기회장 선임까지의 기간은 마지막회장이 속한 단체에서 수행한다.

- 제7조(임무)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장 회 의

- 제8조(회의) 협의회는 정기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별 윤번제로 개최하며,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정기회의 : 분기 1회
 - 2. 임시회의 :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
- 제9조(개회 및 의결방법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.
 - ③ 협의회 의결은 제8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의 동의를 얻어 서면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.
- 제10조(협의사항등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·건의한다.
 - 1.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
 - 2.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
 - 3.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
 - 4. 회원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
 - 5.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장 사무국

제11조(사무국)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

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며,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사무국 운영경비, 인건비, 실비보상비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.

제12조(사무국의 업무)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- 1. 대도시 관련 법령 제·개정 및 정책입안
- 2. 유관기관과의 협의
- 3.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
- 4. 회의계획 수립,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
- 5.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
- 제13조(자문위원) 협의회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협의회장이 위촉한다.

제5장 재 정

- 제14조(경비부담등) ① 협의회의 경비는 적립된 회비와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.
 - ② 부담금은 정기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.
 - ③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④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- 제15조(회계연도)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.
- 제16조(예산 및 결산) ① 협의회의 세입·세출예산은 정기회의에서 협의·결정한다.
- ② 협의회 집행예산은 연 1회 정산·결산하여 회계연도 마감 60일 이내에 보고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약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개정)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
- ③ (적용례) 제4조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는 제11조 및 제12조 의거 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사무국 설치 이전까지는 종전 규 정을 준용한다.(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은 사무국장이 임명된 날로 본다.)

2017.7.11.(화)

공 고

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2017-225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

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(중1-99) 개설공사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7. 3.

포 항 시 장

1. 사업개요

사업의 종류 및 명칭(사업명)	사업예정지 (위치)	사업내용	사업기간	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수조
도로사업 /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 (중1-99) 개설공사	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, 성내리	도로개설 (L=150m, B=20m)	실시계획작성일 ~ 2020. 12. 31.	포항시장 / 포항시 남구 시청로 1

2. 열람기간 및 장소

- 열람기간 : 2017. 7. 3. ~ 2017. 7. 22.(20일간)

- 열람장소 :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시설과(054-270-3434)

- 주민의견 및 이의 제출방법 :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

3.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(별첨)

- 상기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
- 토지 및 물건의 내역은 별첨과 같으며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.

4. 보상시기 · 방법 및 절차

- 보상시기 :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(개별통지)

- 보상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

- 보상산정방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(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거나,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)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.
- 보상절차 :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→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→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(**협의불성립 시** : **수용재결 후 공탁**)
- 감정평가사 추천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8조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

5. 기 타

- 보상계획은 추진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, 보상장소, 보상액,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.
- 편입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 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편입토지 면적은 분할측량 등의 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 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 시설과(054-270-34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